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 SHANGHAI OFFICE NEWSLETTER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December, 2023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CONTENTS

목차

##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1. 법률 뉴스

01. 최고법 민법전 계약편 통칙 사법해석 발표
02. 최고법涉外민사관계 법률적용법에 대한 사법해석(2) 발표
03. 최고법涉外 민상사사건의 국제조약 및 관례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 발표
04.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

### 2. 최신법률법규 ( 별첨 )

0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계약편 통칙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
02. <중화인민공화국涉外민사관계 법률적용법>의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2)
- 03.涉外 민상사사건 심리 중 국제조약 및 국제관례의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
04.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

### 3. 노동법문답

실업보험 수령 및 유급 휴직기간 관련 문답

## 1. 법률 뉴스

### 01. 최고법 민법전 계약편 통칙 사법해석 발표

출처: 인민망

[내용개요: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계약편 통칙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해석”이라 함)을 발표하고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해석”은 일반규정, 계약 체결, 계약 효력, 계약 이행, 계약 보전, 계약 변경 및 양도, 계약 권리 및 의무 종료, 위약책임과 부칙 등 9개 부분으로 나뉜다.]

最高人民法院日前发布《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合同编通则若干问题的解释》(以下简称解释),自12月5日起施行。

据悉,民法典颁布后,司法实践急需出台关于民法典合同编通则的司法解释。为此,最高法在清理相关司法解释的基础上,结合审判实践中遇到的疑难问题,制定了解释。

最高法民二庭、研究室负责人介绍,解释的制定尊重立法原意。起草工作始终将准确理解贯彻民法典的立法意图作为最高标准,坚决避免规则设计偏离立法原意。严格依照立法法赋予的司法解释制定权限,坚守不创设新规则的基本立场,坚决做到根据民商事审判执行工作的实际需要作配套补充细化,确保民法典合同编的优秀制度设计在司法审判中准确落实落地。

保持司法政策的延续性。在起草司法解释的过程中,对于原《合同法解释一》《合同法解释二》《担保法解释》中与民法典并无冲突且仍然行之有效的规定,尽可能保留或者在适当修改后予以保留。此外,对于《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最高人民法院关于当前形势下审理民商事合同纠纷案件若干问题的指导意见》等的相关规定,也根据实施情况及时总结经验,将被实践证明既符合民法典精神又切实可行的规定上升为司法解释,从而对实践发挥更重要的指导作用。例如在违约金、定金等法律适用问题上,解释尽量做到保持司法政策的延续

性, 原则上保留了原司法解释或者司法政策性文件的基本精神, 并根据时代发展作出相应调整。

坚持问题导向。在内容上要求所有条文必须具有针对性, 要有场景意识, 致力于解决实际问题, 所提出的方案要具有可操作性。在形式上不追求大而全, 尽可能做到小而精。此外, 坚持系统观念和辩证思维, 重视制度之间的联系, 做到全面解决问题。

## 02. 최고법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에 대한 사법해석(2) 발표

출처: 신화사

[내용개요: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의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2)》(이하 “해석”이라 함)을 발표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해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법률의 조사규명책임을 명확히 한다. 2. 외국법률의 조사확인경로를 넓힌다. 3. 외국법률의 절차와 제공형식을 조사확인한다. 4. 외국법률의 심사 및 인정절차를 명확히 한다. 5. 외국법률의 심사 및 인정기준을 명확히 한다. 6. 재판문서에 외국법 규명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7. 조사확인비용의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한다. 8. 홍콩, 마카오 법률의 조사참조 적용규칙을 명확히 한다.]

最高人民法院出台了《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若干问题的解释（一）》。这部总共21条的司法解释于2013年1月7日起施行。

司法解释规定，民事关系具有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可以认定为涉外民事关系：当事人一方或双方是外国公民、外国法人或者其他组织、无国籍人；当事人一方或双方的经常居所地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标的物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产生、变更或者消灭民事关系的法律事实发生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可以认定为涉外民事关系的其他情形。

最高人民法院民四庭负责人介绍，该司法解释主要围绕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实施过程中存在的主要问题进行了规定。具体包括：如何界定“涉外民事关系”；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的溯及力；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与其他法律中冲突规范的关系的处理；当事人选择适用法律的时间节点、方式、范围；如何界定我国法律中的“强制性规定”；法律规避行为的后果；先决问题的法律适用；不同涉外民事关系区分适用法律；涉外仲裁协议准据法的确定等等。

我国法院的法官并不熟悉外国法律，对于司法实践中如何确定外国法的内容、如何正确理解该外国法，司法解释规定，人民法院应当听取各方当事人对应当适用的外国法律的内容及其理解与适用的意见，当事人对该外国法律的内容及其理解与适用均无异议的，人民法院可以予以确认；当事人有异议的，由人民法院审查认定。

司法解释还规定，涉及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的民事关系的法律适用问题，参照适用本规定。

### 03. 최고법 섭외 민상사사건의 국제조약 및 관례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 발표

출처: CCTV뉴스

**[내용개요:** 최고인민법원은 《섭외 민상사사건 심리 중 국제조약 및 국제관례의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해석”이라 함)을 발표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해석”은 총 9 조로 섭외 민상사재판에서 국제조약과 국제관례가 적용함에 있어서 준수하는 3 가지 원칙을 구현하였다. 이는 조약의무의 선의의 이행원칙, 국제관례의 존중원칙, 국가주권과 안전, 사회공공이익 수호원칙 등을 포함한다. ]

国际条约和国际惯例在国内如何适用是人民法院涉外民商事审判面临的重要问题。为加快涉外法治建设，服务保障高水平对外开放，提升涉外审判质效，最高人民法院发布《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外民商事案件适用国际条约和国际惯例若干问题的解释》，《解释》自 2024 年 1 月 1 日起施行。

《解释》共九条，体现了涉外民商事审判中适用国际条约和国际惯例遵循的三项原则，即善意履行条约义务原则，尊重国际惯例原则，维护国家主权、安全和社会公共利益原则。主要内容包括：

一是明确适用国际条约的裁判依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第三十条明确规定：“国家依照宪法和法律缔结或者参加条约和协定，善意履行有关条约和协定规定的义务”。根据民商事领域国际条约调整平等主体之间的人身关系和财产关系这一特点，依据对外关系法规定的善意履约原则，《解释》第一条第二款明确海商法、票据法、民用航空法、海上交通安全法等单行法调整范围以外的涉外民商事案件以“参照单行法规定”的方式适用国际条约，有效破解了涉外民商事领域适用国际条约裁判依据不足的问题，同时承继原民法通则精神，明确我国缔结或参加的国际条约与中华人民共和国法律有不同规定的，适用国际条约的规定，但中华人民共和国声明保留的条款除外。

二是明确涉多项国际条约时的适用原则。针对司法实践中存在的同一争议涉及两个或者两个以上国际条约的情况，《解释》第二条规定，人民法院应当根据国际条约中的适用关系条款确定应当适用的国际条约。

三是明确国际条约适用与当事人意思自治之间的关系。在涉外民商事关系应予适用的国际条约中，有部分国际条约允许当事人通过约定排除公约的适用或者改变公约条款的适用效果，但也有部分国际条约具有适用上的强制性，不允许当事人通过约定排除适用。《解释》第三条明确，只有在国际条约允许的范围内，当事人才可以通过约定排除或部分排除国际条约的适用。

四是明确当事人援引尚未对我国生效的国际条约的，可以作为确定合同权利义务的依据。尚未对我国生效的国际条约不能作为人民法院作出裁判的法律依据。但是，如果当事人在合同中一致援引民商事国际条约确定的相关权利义务条款，此时国际条约的相关条款内容即成为当事人约定的合同条款，《解释》第四条明确人民法院可以此作为确定当事人权利义务的合同依据，前提是不违反我国法律、行政法规的强制性规定，不损害我国主权、安全和社会公共利益。

五是明确国际惯例的明示选择适用和补缺适用问题。《解释》第五条和第六条规定了国际惯例的两种适用情形。一方面，在当事人明确选择适用国际惯例的情况下，可以根据国际惯例直接确定合同当事人之间的权利义务。另一方面，在当事人没有明确作出选择，且我国法律和我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均没有相应规定的情况下，人民法院可以适用国际惯例。

六是坚持维护国家主权、安全和社会公共利益的原则。《解释》贯彻对外关系法第三十一条关于条约和协定的实施和适用不得损害国家主权、安全和社会公共利益的规定，在第七条明确“适用国际条约和国际惯例损害中华人民共和国主权、安全和社会公共利益的，人民法院不予适用”，充分彰显人民法院坚定维护国家主权、安全和社会公共利益的鲜明司法立场。



#### 04.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

출처: 신화사

[내용개요: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이라 함)을 발표하고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결정》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출원제도를 보완하여 출원자의 특허취득에 편리를 도모한다. 둘째, 특허심사제도를 보완하여 특허심사의 질을 높인다. 셋째, 특허보호를 강화하여 특허권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한다. 넷째, 특허서비스를 강화하여 특허의 창조와 전환활용을 촉진한다. 다섯째, 외관디자인 국제출원 특별규정을 새로 추가한다.]

国务院总理李强日前签署国务院令，公布《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的决定》（以下简称《决定》），自2024年1月20日起施行。《决定》主要从以下方面对专利法实施细则作了修改。

一是完善专利申请制度，方便申请人取得专利。明确电子形式视为书面形式，完善以电子形式提交和送达各种文件的相关规定。细化优先权相关制度，明确在一定期限内请求恢复优先权，增加或者改正优先权要求，以援引在先申请文件的方式补交权利要求书、说明书或者其中部分内容的条件和程序。明确对局部外观设计专利申请文件的要求。放宽不丧失新颖性的情形。





二是完善专利审查制度，提高专利审查质量。规定提出各类专利申请应当以真实发明创造活动为基础，不得弄虚作假。完善复审制度，规定审查内容除复审请求外，还包括专利申请存在其他明显违反专利法及其实施细则有关规定的情形。调整保密审查期限。增加延迟审查制度。

三是加强专利保护，维护专利权人合法权益。新增专利权期限补偿专门章节，明确提出专利权期限补偿请求的条件和时间要求、补偿期限计算方式以及补偿范围等。完善专利纠纷处理和调解制度。

四是加强专利服务，促进专利创造和转化运用。规定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提升专利信息公共服务能力，促进专利相关数据资源开放共享、互联互通。细化开放许可制度，明确提出开放许可声明的要求、不得实行开放许可的情形等。增加强制代理例外规定，简化对专利申请文件的形式要求，减轻创新主体负担。完善职务发明创造奖励报酬制度。

五是新增外观设计国际申请特别规定，与工业品外观设计国际注册海牙协定（1999年文本）相衔接。明确外观设计国际申请视为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的外观设计专利申请，在优先权要求、新颖性宽限期、分案申请等方面与国内外观设计专利申请制度作出衔接性规定。

## 2. 최신법률법규 ( 별첨 )

0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계약편 통칙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 
02. <중화인민공화국涉外民事관계 법률적용법>의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2) 
- 03.涉外 민상사사건 심리 중 국제조약 및 국제관례의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 
04.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 

### 3. 노동법문답

◆ 실업보험 수령 및 유급 휴직기간 관련 문답

Q: 고용회사와의 노동관계가 종료된 후 실업보험 수령조건은 어떠한지?

A: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실업 전 고용회사와 본인이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경우
- (2) 본인의 의사가 아닌 기타 사유로 취업이 중단된 경우
- (3) 이미 실업등록 절차를 진행하였고 또한 구직 수요가 있는 경우

Q: 실업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의료보험대우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A: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기간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기본의료보험을 지불하고 개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본사직원 기본의료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의료보험대우를 향수한다.

Q: 산재직원이 유급 휴직기간에 있을 경우, 고용회사의 급여 지급기준은 어떠한지?

A: 유급 휴직기간 내에 고용회사는 매달마다 기존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및 복리대우를 지급하는데, 그 기준은 산재직원의 부상 전 12개월의 평균급여이다. 부상 전 산재직원의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근무 달수에 따라 평균 급여소득을 계산하여 지급하되, 본사직원의 매달 최저급여기준 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Q: 유급 휴직기간 내에 산재직원이 퇴직년령에 도달할 경우, 회사가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 이 경우 산재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달마다 기본양로보험대우를 수령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만일 기본양로보험대우가 기존 급여기준 보다 낮을 경우, 고용회사에서 노동능력감정결론이 내린 달까지 관련 차액을 보충하며, 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는 규정

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고용회사에서 노동능력감정결론이 내린 달까지 기존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범무법인[유] 지평